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정 2012.1.1.

개정 2017.6.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0조(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되는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프로그램사업」(이하 “기술사관육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기술사관 협약학생(이하 “기술사관생”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으로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운영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기술사관육성사업 세부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며, 규정과 운영지침의 내용이 상충될 때에는 운영지침을 따른다.

제2조(교육목표) 기술사관생은 지역 내 지식 기반 이동통신 산업을 선도할 예비 장인으로서 지역 중소기업의 최고 기술자, 기술 명장 및 창업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 기술 인재로 육성함을 목표로 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기술사관생은 본 대학 모바일스쿨 이동통신전공 내에 별도 반으로 편성하고, 그 운영은 “이동통신 현장인력 육성사업단”에서 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이동통신 현장인력 육성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술사관육성사업에 참여하는 특성화고, 전문대학, 중소기업이 4·6년제 교육과정의 운영 및 채용연계를 추진하기 위해 구성한 컨소시엄을 말하고, 사업단장은 기술사관육성사업을 운영하는 총괄책임자로 한다.
- ② “총괄책임자”라 함은 사업단의 기술사관육성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 ③ “운영위원회”라 함은 사업단의 기술사관 육성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총괄관리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 ④ “협약기업”이라 함은 기술사관육성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말하며 협약에 의해 연계교육과정 참여 및 졸업생 연계 채용 등의 역할을 이행한다.
- ⑤ “사업비”라 함은 중소기업청장이 교부하는 보조금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교부하는 특별교부금 및 대응자금을 말한다.
- ⑥ “대응자금”이라 함은 기술사관육성사업의 수행을 위해 참여기업, 참여학교,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서 부담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 ⑦ “기술사관인증”이라 함은 기술사관생으로서의 자질 및 인품 등을 함양하고 있는지 여부를 소정

의 평가과정을 통하여 그 자격을 소유하고 있음을 표하는 증서를 말한다.

제2장 대학 입학 및 휴(복)학

제5조(입학정원) 본 대학의 기술사관생 입학정원은 대학 입학전형계획에 따른다.

제6조(입학자격) 기술사관생은 본 대학이 운영하는 기술사관육성사업에 참여한 학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협약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한다.

제7조(입학전형) 본 대학 입학전형의 특별전형 독자기준(수시 1차)으로 우선입학에 해당하며, 입학과 동시에 모바일스쿨 이동통신전공으로 배정한다.

제8조(휴학) 기술사관생은 졸업 시까지 학업을 연속함을 원칙으로 하며 중도 휴학 시 기술사관생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단, 1개 학기 이상 수업을 연속하여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질병, 사고로 인한 장기 입원 등)으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한다.

제9조(복학) 기술사관생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휴학자는 이동통신전공으로 복학할 수 있으나 기술사관생이 아닌 이동통신전공 휴학자는 기술사관 별도반으로 복학할 수 없다. 단, 제8조에 의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휴학자의 복학은 본 대학 학칙에 준하여 복학을 허용한다.

제3장 학기 및 수업

제10조(학기) 기술사관생은 졸업 학기를 인턴십 과목으로 수강 신청한다.

제11조(현장 실습 및 인턴십) 현장 실습 및 인턴십에 관한 운영규정은 본 대학 운영 규정에 따른다.

- ① 현장 실습 및 인턴십 교과목은 협약기업 현장실무와 연계하여 수업을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현장 실습 및 인턴십을 위한 업체 선정은 협약기업 중 기술사관생이 희망하는 기업을 우선으로 배정하며 사전에 충분히 홍보 또는 답사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한다.

제12조(선이수학점) 대학과목선이수 학점이란 기술사관생도가 대학입학 전에 대학에서 개설한 기술사관 관련 교과목을 수강하여 취득하는 학점으로 기술사관생도가 대학에 입학 한 후 학점 취득한 학과목에 대해 대학의 정규학점으로 인정받는 학점을 말한다.

제13조(선이수학점 인정) 기술사관생도가 대학 입학 전에 본 대학에서 기술사관생도를 대상으로 개설하는 선이수학점 교과목(또는 특강)을 이수하면 다음과 같이 학점을 인정한다.

- ① 선이수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학입학 후 해당과목에 대해 수강 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 ② 선이수과목의 인정 학점은 최대 6학점까지 대학 정규 학점으로 인정한다.
- ③ 성적은 해당 학기 성적 사정 시 일반 교과목과 함께 사정하여 선이수학점으로 최종 반영한다.

제14조(기술사관인증평가) <삭제>

제15조(수업) 기술사관반은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와 목표를 달성하고 교육 및 학습효과 제고를

위하여 별도반을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장 학

제16조(종류) 장학의 종류는 본 대학 장학 규정에 준하되 본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성과제고를 위하여 특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특별 장학금에 대한 재원은 사업비로 하며, 운영 방법 등은 운영협의회에서 정한다.

제5장 동아리 활동

제17조(목적) 전공지식에 대한 학습내용의 응용으로 현장실무와 연계된 교육활동을 함으로써 미래 중소기업을 선도할 예비 장인 양성 및 최고기술자로서의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목표로 직무별 동아리 활동을 적극 활성화 하며, 대학은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제반 사항에 협조한다.

제18조(활동) 기술사관생 동아리는 기술사관반 전공 동아리로서 기술사관육성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 ① 기술사관생은 1개 이상의 동아리에 소속되어 활동할 수 있고 활동 내용 및 결과는 기술사관인증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② 동아리 참여자는 특성화고 재학 학생들과의 연계 활동을 장려하며, 멘토로서의 역할과 함께 후대 양성에 힘쓰도록 한다.
- ③ 사업단장은 필요 시 동아리 활동 및 운영에 따른 경비를 사업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19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 학칙 및 제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0조(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연계하여 재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 교사 및 학생에게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실

습기자재 구입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 추진 절차, 지원 내용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이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